「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9월 4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6년 9월 14일 회부

○ 상정일자: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6년 9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담당관)

가. 제안이유

❍ 여비 부정수령에 따른 가산징수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비하고, 부정수령액・가산징수 금액・납부기한 등의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 결제 및 정산 관련 규정을 지방공

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등 지방 실정에 맞게 준용하는 등 여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경숙)

❍ 본 조례안은 여비 부정수령에 따른 가산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 결제 및 정산 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준용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임.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서는 지방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서는 부정 수령액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조례에 별도로 두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정한 가산징수 기준을 따르도록 정비하고 가산징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

에 반영하였음. 이는 상위법령과 조례 간 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상위법령 규정된 내용을 재규정하여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 그에 따라 조례의 가산징수 기준을 다시 개정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방지하는 등 조례에 별도의 기준을 두는 실익이 없었던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임.

❍ 이번 개정안은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조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며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